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2017. 7. 14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15일, 2017년 7월 12일

-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보류
-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진섭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안 반영(안 제30조)
 - 원석시가 산정기준 변경 : 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
-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함

3. 검토보고 요지

○ 위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0조에서는 원석시가 산정기준을 “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” 함으로써 기준을 구체화하였고,
- 안 제40조에서는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음.

○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기관인 행정자치부, 산림청의 운영기준 및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안 제30조는 「산지관리법」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“채광물채취료 등”에서 “토석 채취료 등”으로 수정하고, 같은 조 2항에 원석시가 적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, 같은 조 4항에 “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”는 지난 제352회 임시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위 조례를 개정한 만큼 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가. 수정사유

-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도 용어를 동일하게 규정
- 문맥에 맞도록 문구와 자구를 수정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산지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“채광물채취료 등” 을 “토석 채취료 등” 으로 수정
-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“감정평가기관” 을 “감정평가업자” 로 수정
-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문맥에 맞도록 자구 수정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수정안)」

의안번호	제 62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5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일부개정(2016.12.26.)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

2. 주요내용

- 토석채취료 관련 산림청과 행정자치부간의 협의안 반영(안 제30조)
 - 원석시가 산정기준 변경 : 용도별로 기준하여 산정
- 개정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정함
-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도 용어를 동일하게 규정
- 문맥에 맞도록 문구와 자구를 수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채광물채취료 등)”을 “(토석 채취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광석·토석 등의 채광물”을 각각 “토석”으로, “원석의 세제곱 미터당”을 “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채광물의 세제곱 미터당”을 “원석의 세제곱미터 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”을 “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기관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채광물의”를 “토석의”로, “채광물채취료”를 “토석채취료”로 한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

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인접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5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6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
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석·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·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 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	제30조(토석 채취료 등) ① ----- ----- 토석 ----- ----- 토 석 ----- -----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 터 당 ----- -----.
② 제1항에서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 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	② ----- ---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----- ----- . 다만,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③ -----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----- -----.
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,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,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감정평가업자----- ----- ----- 그 밖에 ----- -----.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	⑤ ----- 토석의

광물의 종류별,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·폐하천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2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3.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,5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3,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

----- 토석채취료
-----.
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

배 이내 토지(다만, 특별시·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, 시의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, 읍·면 지역은 1,000제곱미터 이내를 한도로 한다)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, 다수의 도 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문에 따른 1,500제곱미터 또는 3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,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.

4. 제3호에 따른 분할매각 시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.

5. 도와 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 시 및 광역시

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
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5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
6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
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
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

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군의 읍·면 지역 1,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다만, 도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

6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(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)로서 도유지 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

7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로서 시·군의 지역에 위치한 도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 중인 자에게 10,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.

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관련법령 발췌

국민행복 대한민국, 정부3.0		
	행 정 자 치 부	
수신 산림청장(법무감사담당관) (경유) 제목 토석채취료 관련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 검토의견 회신		

1. 산림청 **법무감사담당관실-1147(2016.2.22)호**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**토석채취료** 관련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에 대한 우리 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

현 행	개정(안-산림청 의견)
제31조(토석채취료 등)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증에 그 연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	제31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(단서 삭제)
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-----
④ ~ ⑤ (생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·유지·보존·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, 그 세부적인 운용·관리는 재산의 형태, 용도, 목적 등에 따라 각 부처·청에서 개별 법률(도로법, 하천법, 자연공원법, 산림기본법 등)을 제정하여 운용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 소유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의 관리 처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산지 이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 수립·시행하는 부처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아울러, 토석채취료 산정방법에 관한 귀 청의 공유재산 조례 개정(안)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. 끝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38조(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23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□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

제16조(수익매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익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익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1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

2.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익매각을 할 수 있다

3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·도의 시·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

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

4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·폐구거·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.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5.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
6.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7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8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